

# 무장분쟁 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무장분쟁의 당사자들은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일부 특정한 사용 방식은 무장분쟁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모든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책임 있는 행동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침 1:** 무장분쟁 당사자의 병력은 개교 중인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a) 이 원칙은 정규 수업시간 외 주말과 공휴일, 방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교 상태인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도 해당한다.

(b) 무장분쟁의 당사자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력이나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교육 시설 운영자들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비우게 해서는 안된다.

**지침 2:** 무장분쟁 당사자의 병력은 무장분쟁에 따른 위협으로 인해 버려진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다른 가능한 대안이 없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되, 유사한 군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기간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한다. 그 위치나 구조가 그만큼 편리하지 않더라도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그러한 건물이 병원과 같이 국제인도주의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무장분쟁의 당사자들은 언제나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버려진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b) 무장분쟁 당사자들의 병력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버려진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는 병력이 그곳에서 철수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이 그러한 학교를 다시 개교시킬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c) 병력이 철수한 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시설에 가해진 손상을 가능한 조속히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모든 무기와 탄약, 불발탄, 기타 전쟁 후 남은 물건들을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지침 3:** 무장분쟁의 상대측이 향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파괴하는 조치는 절대 취해서는 안된다.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는 개교 중이거나, 공휴일 등으로 휴교 중이거나, 또는 버려진 경우를 불문하고 민간 시설로 간주된다.

**지침 4:** 무장분쟁 당사자의 병력에 의해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교가 사용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그러한 시설이 공격 대상에 해당하는 군사적 용도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무장분쟁 당사자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격 대상이 될 것임을 적군에 미리 경고하는 등, 그러한 시설을 공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a) 무장분쟁의 당사자들은 군사 목표가 된 학교를 공격하기 전에 아이들은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학교의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해 지역사회 교육 접근성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b) 무장분쟁 당사자 중 한쪽의 병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반대측 당사자가 초중등학교나 대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시설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증거나 흔적을 제거하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민간 당국에 해당 시설을 반환해야 한다.

**지침 5:** 필수적인 안전을 확보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경비를 위해 무장분쟁 당사자의 병력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경우, 적절한 훈련을 받은 민간인을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경비로 활용해야 한다. 필요시, 아동과 학생, 교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

(a) 무장분쟁 당사자의 병력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경비 업무를 맡는 경우, 학교의 민간 시설로서의 위상과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학교 부지나 건물 내에 그러한 병력이 상주하지 않도록 한다.

**지침 6:** 무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최대한 그리고 적절한 모든 경우에, 당사자의 교리, 군사 매뉴얼, 교전 규정, 작전 명령, 기타 배포 수단 등에 본 지침을 반영하여 전체 명령 계통에서 바르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무장분쟁의 당사자들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